

이 보도자료는 14일 10:00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
전화 032-860-4340

보도자료
2024. 5. 14.(화)

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로 억 대의 수익 취득한 유튜버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이곤호)는 연예인,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유료회원 등으로부터 억 대의 수익을 취득한 '사이버렉카(Cyber-wrecker)' 유튜버를 5. 13.(월) 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.

※ 사이버렉카 : 사이버공간에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짜깁기한 콘텐츠를 올려 이슈를 빠르게 견인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

- 검찰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단발성 모욕 등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'사이버렉카'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하고, 유튜브 채널의 수익금 계좌 추적, 주거지 압수수색,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 포렌식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
- 그 결과, 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고,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허위 또는 왜곡된 영상을 게시하여 2억 5,0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으며, 본건이 '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'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엄단하였습니다.

- 앞으로도 검찰은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'사이버렉카'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,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[피고인] A(여, 35세), 유튜버
- [공소사실]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, '21. 10. ~ '23. 6.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B, 인플루언서 등 총 7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23회 게시하고,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외모 비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하여 [정보통신망법위반 (명예훼손), 모욕], 연예인 B의 소속사 C에 대한 [업무방해]

※ 피해자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첨

2 수사 경과

- '23. 12. 13. 경찰,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건 송치
- '24. 2. 15. 검찰,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
- '24. 4. 8. 추가 피해자 5명 고소장 접수
- '24. 2. 29., 4. 26. 구속영장 2회 청구(법원 기각)

※ 검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월 평균 약 1,000만원의 수익을 얻고,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, 노트북 등을 은닉·손괴한 점 등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,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

- '24. 5. 13. 피고인 불구속 기소

3 수사 결과

사이버렉카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

- 경찰은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하였으나, 검찰은 '금전'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들의 '사이버 불링'(cyber-bullying)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적극적으로 보완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

- 피고인은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신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나,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피고인이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.
 - 위 노트북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 등 다수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추가 영상을 발견했고, 추가적인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.
-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영상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,
 - 수사한 결과,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**가짜 이슈 생성, 음성변조, 짜깁기 편집**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, 단기간에 약 **2억 5,000만원의 수익을** 취득한 **'사이버렉카'** 범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.
-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고,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하였습니다.

유튜브 채널의 수익구조와 범죄수익도 밝혀냈습니다

-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*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소속사도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등으로 홍보하고, 영상을 시작할 때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었습니다.

* 유료 회원제의 회원 등급은 연습생(월 1,990원), 아이돌(월 4,990원), 슈스(월 12,000원), 스페셜(월 600,000원) 및 비밀단특방(월 30,000원) 등으로 구성되고, 특히, 가입 초기에는 할인(첫달 멤버십 요금 20% 할인)이 제공되며, 10대 청소년도 월 1,990원으로 부담 없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임

[별첨]

피해자별 공소사실 요지

	피해자	공소사실 요지
1	피해자 B	피해자로 인해 소속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질투로 해당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외 다수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모욕]
2	피해자 C (소속사)	소속 가수의 음반을 사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업무방해]
3	피해자 D	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]
4	피해자 E	○○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○○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외 다수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모욕]
5	피해자 F	○○○ 지방흡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○○○ 지방흡입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외 다수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모욕]
6	피해자 G	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연애를 하느라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외 다수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모욕]
7	피해자 H	얼굴부터 가짜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영상 제작·게시 등 [모욕]
8	피해자 I	코디의 신발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‘떡튀’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·게시 [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]